

# 2019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채 시험 공고

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9년 5월 20일

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- 채용인원: 8명
  - 신규채용: 6명(전기7급 3명, 무기계약근로자 3명)
  - 경력채용: 2명(환경7급 2명)

구분	시험	직렬	직급	인원	시험과목	담당업무
계				8		
일반전형	공개경쟁 시험	전기	7급	3	영어, 전기공학, 일반상식	하수처리시설 등 공단시설물 관리
	경력경쟁 시험	환경	7급	2		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
	공개경쟁 시험	무기계약 근로자		2	인.적성검사	행정업무
				1		체육업무

※ 2개 분야 이상 복수지원 불가

## 2

## 전영절차

구분	1차	2차	3차	비고
전기7급 (공개경쟁)	서류심사	필기시험	면접심사	
환경7급 (경력경쟁)		인·적성검사		
무기계약근로자 (공개경쟁)				

- 서류심사: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사
- 필기시험(전기7급)
  - 시험과목: 영어, 일반상식, 전기공학
  - 시험문항수: 과목별 20문항
  - 시험시간: 75분
  - 시험방법: 과목별 100점 만점, 4지 선다형
  - 배점기준: 각 과목별 40점 이상,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
- 인·적성검사(환경7급, 무기계약근로자)
  - 인성검사: 240문항/30분
  - 직무적성검사: 70문항/60분
  - 배점기준: 수행능력점수(인성+적성)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

○ 면접심사

· 심사기준

- 공단 직원으로서의 해당 직무 이해도, 예의, 품행 및 성실성
-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
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응용력, 창의력, 의지력, 그 밖에 발전가능성

· 기타사항: 2차전형(필기/인·적성) 점수는 미포함

**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**

○ 전형절차 공통사항

-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
**3**

**응시 자격요건**

(기준일 : 공고일)

공통기준

가. 연 령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

나. 거주지

**<공단직(전기7급, 환경7급)>** - 1) 또는 2)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- 1)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, 경상북도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- 2)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<무기계약직>

1)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

※ 거주지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확인하며, 행정 구역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

다.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

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

마. 결격사유 (※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)

1) **공단직(전기7급, 환경7급):**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

<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<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2) 무기계약직: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
관리규정 제8조

**<밀양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(채용결격사유)>**
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□ 자격요건(기준일 : 공고일)

-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며,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

구분	직렬	자격요건
공개경쟁 시 협	전기7급	<p><b>전기분야 산업기사</b> 이상 자격증 소지자 (※ 아래 나열된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보유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기산업기사</li> <li>2. 전기기사</li> <li>3. 전기기능장</li> <li>4. 전기기술사</li> </ol> <p>- 발전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</p>
경력경쟁 시 협	환경7급	<p><b>수질환경산업기사</b>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※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</li> <li>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기업체(상시 종사자 50명 이상)에서 사원급(또는 상당의 직) 이상의 직으로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</li> </ol>
공개경쟁 시 협	무기계약직 (행정업무)	<p><b>사무(행정, 회계) 관련업무 유경험자</b>로써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워드프로세스(2급 이상) 혹은 컴퓨터활용능력(2급 이상)</li> <li>2. 전산회계(1급 이상) 혹은 전산세무(2급 이상)</li> <li>2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	무기계약직 (체육업무)	<p><b>아쿠아로빅(AEA자격증)</b>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,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공분야에서 체육업무 활성화 등의 유경험자</li> <li>2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
채 용 절 차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5.20(월) ~ 5.3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</li> <li>※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불가</li> </ul>
원서접수	5.27(월) 10:00 ~ 5.31(금) 18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접수처 : 채용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myfmc.torc.co.kr">https://myfmc.torc.co.kr</a>)</li> <li>• 접수마감 : 5.31(금) 18:00</li> </ul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공고	6.4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단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myfmc.torc.co.kr">https://myfmc.torc.co.kr</a>)에 공고</li> </ul>
필기시험 및 인·적성검사	6.8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</li> </ul>
필기시험 및 인·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/ 면접 장소 공고	6.12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단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myfmc.torc.co.kr">https://myfmc.torc.co.kr</a>)에 공고</li> </ul>
면접시험	6.15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·적성검사 합격자 대상</li> </ul>
최종합격자 발표	6.18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단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myfmc.torc.co.kr">https://myfmc.torc.co.kr</a>)에 공고</li> </ul>
증빙서류 제출	6.19(수) ~ 6.2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→ <b>공단 사무실로 직접 방문 제출</b></li> <li>※ <b>자격요건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</b></li> </ul>

- 지원서 작성은 채용홈페이지 (<https://myfmc.torc.co.kr>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,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○ 응시서류

- ①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  - ② 자기소개서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  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  - ④ 가점항목 증빙서류 1부(채용 홈페이지 첨부, 해당자에 한함)
- ※ 가점 대상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증명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## ○ 제출서류

## ★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

-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 - ② 경력/재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③ 주민등록 초본 1부
  - ④ 자격증 사본 1부
  -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⑥ 기타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
- ※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졸업증명서도 첨부, 경력/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직급, 근무부서/업무, 법인사업체 여부(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) 기재
- ※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변동 및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 제출
- ※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
- ※ 경력/재직증명서 발급 시 업무와 기간, 기업체 종사자 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

-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, 증빙자료 제출기간 이외에는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. 또한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 6

## 보수 및 복무

- 공단 보수규정, 복리후생규정, 취업규정,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

## 7

## 가산 특전

구분	세분	가점비율	비고
취업 지원 대상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.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	필기, 면접시험 만점의 10%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하여,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.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	필기, 면접시험 만점의 5%	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(10% 또는 5%)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 또는 110)
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, 연령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동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우편 송달시의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입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,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 
※ 각종 지원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경력증명 서류로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은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,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밀양시시설관리공단,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, 채용홈페이지 (<https://myfmc.torc.co.kr>)에 공고합니다.
-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(☎ 055-359-4606)